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신설〉
■ 김윤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230호)

2024.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개 요	1
II. 주요 내용별 검토	2
1. 개정안의 내용	2
2. 검토의견	6
3.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12

I. 개 요

1.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윤의원 등 38인

(2) 제 안 일 : 2024. 7. 1.

(3) 회 부 일 : 2024. 7. 2.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의료분야의 빠른 발전에도 불구하고, 낡은 현행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련 법률로 인해 전문성을 갖춘 개별 보건의료인력들이 역량을 펼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 범위가 불분명하고, 이를 조정하고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부재해 직역 간 업무가 중첩되는 영역을 중심으로 보건의료인력의 갈등이 야기되고 있음.

이에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 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을 수립하도록 하고, 보건의료직역들, 시민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하여 보건의료직역별 업무범위가 업무 전문성과 업무 환경을 고려하여 결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건의료직역 간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8조의2 신설).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 및 한계, 유권해석 및 분쟁조정신청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며 (안 제8조의2 신설),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 사항으로 ‘보건의료인력 업무범위 조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가 동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2항제8호 및 제4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5조(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5조(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u><신 설></u>	<u>8. 보건의료인력 업무범위 조정</u>
8. (생 략)	<u>에 관한 사항</u>
③ (생 략)	<u>9. (현행 제8호와 같음)</u>
<u><신 설></u>	③ (현행과 같음)
	④ <u>제8조의2에 따른 보건의료</u>
	<u>인력 업무조정위원회는 제2항</u>
	<u>제8호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u>

④ ~ ⑥ (생략)

<신설>

제시할 수 있다.

⑤ ~ ⑦ (현행 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제8조의2(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

위원회) ① 보건의료인력의 업무범위를 업무 전문성과 업무환경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이하 “업무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업무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2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의 면허·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 범위에 관한 사항

2. 제2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간 면허·자격에 대한 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

3. 보건의료인력 간 협업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보건의료인력 업무범위의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

5. 보건의료인력 업무범위 분쟁 조정신청에 관한 사항

6. 제7항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행위별 분과위원회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업무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업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5항제4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업무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제2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0명 이상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자단체 및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10명 이상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10명 이상

4. 보건의료인력의 면허·자격
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0명 이상

⑥ 위원장은 업무조정위원회
위원 20명으로 구성된 운영위
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운
영위원회의 위원은 제5항제1호
의 위원과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을 같은 수로
구성하여야 한다.

⑦ 운영위원회는 업무조정위원
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 영역별 분과위
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
우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제5항
제1호의 위원과 같은 항 제2호
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을 같은
수로 구성하여야 한다.

⑧ 운영위원회는 분과위원회에
서 조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조
정하거나 업무조정위원회의 심
의 과정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
하여 중재할 수 있다.

⑨ 업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심의·의결한 사
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u>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u> <u>⑩ 그 밖에 업무조정위원회 · 운영위원회 · 분과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시행일 :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2. 검토의견

- 현행법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약사 및 한약사, 의료기사, 영양사 등을 보건의료인력으로 규정¹⁾하고 있고, 보건의료인력의 업무 범위에 대해서는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음.
- 「의료법」 제2조에 따르면,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조산사는 조산과 임신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간호사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등을 각각 그 임무로 하고 있음.²⁾

1) 「보건의료인력지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보건의료인력"이란 다음 각 목의 면허·자격 등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
나. 「약사법」에 따른 약사 및 한약사
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
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마.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 등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자격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다만, 업무 범위가 “의료” 및 “보건지도” 등 추상적인 용어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업무 범위를 구체적·개별적으로 특정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³⁾

□ 이와 같은 포괄적인 업무 범위 규정으로 인해 보건의료직역 간 업무 범위 갈등과 무면허의료행위 논란 등의 문제가 나타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최근 4년간(2021년~2024년 6월)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인 간 업무범위 관련 유권해석 요청에 대하여 해석을 내린 사례는 총 630건에 이르고, 간호인력의 수술보조행위 등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고발하는 사례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보건의료인 간 업무범위 유권해석 현황(2021.~2024.6.) >

구분	계	2021	2022	2023	2024.6
소계	630	116	146	274	94
의사-한의사	62	11	13	30	8
의사-치과의사	74	18	15	29	12
의사-간호사	150	28	40	60	22
간호사-간호조무사	113	18	17	61	17
간호사-의료기사	216	38	60	84	34
약사-한약사	15	3	1	10	1

자료: 보건복지부

- 2) 「의료법」 제2조(의료인) ②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1.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2.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3.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4. 조산사는 조산(助産)과 임신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5. 간호사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 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 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 다.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 라.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 3) 다만, 의료기사 등 일부 직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의 업무 범위 등) 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사의 종류에 따른 업무 및 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이하 “의료기사등”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업무범위**는 별표 1에 따른다.

□ 그간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의 업무 범위를 관련 보건의료단체 등과 함께 논의하기 위하여 ‘의료인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 ‘의료법체계연구회’ 등을 운영해 왔으나, 실질적인 결론을 도출하지는 못한 상황임.

- 2019년에 구성된 ‘의료인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⁴⁾는 같은 해 ‘진료보조업무범위 협의체’로 명칭을 변경하고 논의 범의를 구체화하여 운영하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였음. 이후 ‘진료지원인력(PA) 간호사’ 문제가 불거지면서 2023년 6월부터 전문가, 보건의료단체 및 환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를 운영하여, 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을 논의하고 있음.
- ‘의료법체계연구회’⁵⁾는 「의료법」의 법체계 정비를 위하여 전문가, 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3년 9월부터 구성·운영하고 있는데, 업무 범위 규정의 모호성으로 인한 현장 갈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력의 업무 범위 등도 논의 사항에 포함됨.

□ 이에 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 업무 범위의 논의 체계를 위원회 형태로 법정화하고, 위원회 위원으로 보건의료인력단체 추천인, 노동

4)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병원간호사회 등이 참여함.

5) 위원장 1명, 의료분야 3명, 간호·요양분야 3명, 법률분야 2명으로 구성됨.

회차	논의 주제
1차('23.9.15.)	위원회 운영 방안, 목표, 회차별 논의주제(안) 공유
2차('23.9.27.)	의료법 체계의 문제점과 검토 필요과제
3차('23.10.18.)	한국과 일본의 의료법 체계 비교
4차('23.11.1.)	간호 관련 현안 : 법과 현실
5차('23.11.15.)	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제도
6차('23.11.29.)	노인 요양 돌봄과 의료법 개선 과제
7차('23.12.13.)	의료돌봄의 현황과 문제점
간담회('23.12.28.)	의료법체계 연구회 - 보건의료단체 간담회
8차('23.12.27.)	의료법의 개선과 의료행위의 쟁점
9차('24.1.30.)	의료법체계 개편 관련 권고문 논의
10차('24.2.20.)	

출처: 보건복지부

자·시민·소비자단체 추천인, 공무원, 전문가 등 다양한 인원이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업무 범위를 둘러싼 지역 간 이견을 좁히고 실제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업무 갈등을 방지·해소할 수 있는 업무 범위의 구체화 논의가 한층 진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목적이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및 근무환경의 개선이라는 점⁶⁾, 각 보건의료인력의 업무 범위와 내용 등을 「의료법」등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보건의료인력의 업무 범위 구체화를 위한 위원회 설치 근거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규정하는 것이 법 체계상 바람직한 것인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또한, 현행법 제8조⁷⁾의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 중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될 수 있다는 의견⁸⁾이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 6)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을 지원하고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과 우수 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7)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8조(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①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3. 의료취약지 보건의료인력 배치 지원에 관한 사항
4. 보건의료인력 지원과 관련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8) 행정안전부는 별도 위원회를 신설하기보다는,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등의 분과·전문위원회 형태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의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와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비교 >

구 분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현행 제8조)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개정안 제8조의2)
소속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위원장	보건복지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위원구성	위원장 포함 25명 이내 - 의료인 단체, 의료기관단체, 약사단체 및 의료기사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 노동자단체,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 50명 이상 100명 이하 - 보건의료인력 단체 추천 20명 이상 - 노동자단체 및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추천 10명 이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10명 이상 - 보건의료인력의 면허·자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0명 이상
기 능	다음 사항에 대한 심의 -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 의료취약지 보건의료인력 배치 지원에 관한 사항 - 보건의료인력 지원과 관련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다음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 보건의료인력의 면허·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한계 - 보건의료인력 간 면허·자격에 대한 업무조정 - 보건의료인력 간 협업 체계 구축 - 보건의료인력 업무범위의 유권해석 및 분쟁조정신청 - 분과위원회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개정안과 같이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경우, 위원회의 명칭, 기능, 구성, 운영, 존속기한 등에 관하여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고려하는 한편,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첫째, 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는 심의·의결을 목적으로 하는 의결기관인 위원회로 해석될 수 있고,⁹⁾¹⁰⁾ 이 경우 그

9) 김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2500호)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 지원법」 제8조의2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2항에 따른 의료인의 종별 임무의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1230호)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2500호)을 함께 보면 「국민건강보험법」상 규정된 건강보험정책심의회(제4조),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제45조), 보험료율 등(제73조)와 유사한 규정 형식을 취하고 있음.

10) ○ 의결기관인 위원회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다수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고 계속성·상시성이 있는 업무에 관하여 심의·의결 등을 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위원회로서,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적 절차이며 그 의결내용이 관계 행정기관 등을 구속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위원회의 유형에 따라 “…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을 심의하기 위하여” 등의 표현을 적절하게 사용함으로써 해당 위원회의 기능을 드러내는 것이 바람직하다.…해당 위원회가 의결기관인 위원회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위원회의 의결을 필요적 절차로 규정하고 그 의결에 구속력이 있음을 명시하도록 하며, 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의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

의결 내용이 관계 행정기관 등을 구속하는 구속력을 가지느냐, 안 제8조의2제2항 각호의 심의·의결사항 중에서 위원회에 최종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하고 바람직한 사항(의결사항)과 위원회의 심의·조정 등을 통해 행정관청(보건복지부장관)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항(심의사항)을 구분하여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예를 들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경우 심의·의결사항 중 요양급여의 기준,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보험료율 등은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가입자의 소득과약 실태 조사, 보험료 부과 강화 방안 등 제도 개선 사항 등은 심의사항으로 각각 명시하고 있음.¹¹⁾

2024.5., pp.287~288).

○ 법제처에 따르면 “자문위원회 중 심의기관, 조정기관 등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의 기능을 “...사항을 심의한다.”라고 하지 않고 “심의·의결한다”거나 “심사·의결한다”는 식으로 “의결”이라는 용어를 표현하려고 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나, 어떤 종류의 위원회든지 의결행위는 필요하므로 이 경우의 “의결”은 모든 위원회의 속성일 뿐이다. 위원회의 법적 성격은 그 설치 법령 전체를 평가하여 결정되는 것이며, 설치 근거 규정에서 “의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여 해당 위원회가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의결기관이라고는 볼 수 없다(법제처 2011. 3. 24. 11-0070 해석례).“고 함.(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법제처, 2023., p.405)

11)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①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의결은 제외한다)

2. 제41조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기준

3. 제45조제3항 및 제46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4. 제73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5. 제73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5의2. 보험료 부과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의결은 제외한다)

가. 건강보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의 소득 과약 실태에 관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나. 가입자의 소득 과약 및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보험료 부과와 관련된 제도 개선 사항으로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6. 그 밖에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5조(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은 그 직전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5월 31일까지 체결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직전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30일까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요양급여비용을 정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비용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으로 정한 요양급여비용으로 본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이 정해지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요양급여비용의 명세를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제73조(보험료율 등) 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80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둘째, 개정안이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의결기관인 위원회로 규정하려는 취지인 경우 행정청을 구속하는 구속력을 가지므로 법률에서 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의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며¹²⁾, 안 제8조의2제4항에서 업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보건복지부차관을 규정한 것은 보건복지부가 복수 차관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누가 위원장이 되는지 특정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차관(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과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셋째, 안 제8조의2제6항부터 제8항까지에서는 업무조정위원회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운영위원장의 임명 또는 위촉에 관한 사항 및 운영위원 정수(20명)에 운영위원장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3.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1) 보건복지부 의견(일부수용)

- 보건의료 직역 간 업무범위가 업무 전문성과 업무환경 등을 고려하여 결정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에 동의하나,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보건의료인력 수급,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과 우수 인력 양성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업무범위 조정 기전은 법령체계 상 의료인 면허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에

12) 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 2024.5., p.288.

규정하는 것이 적합함.

- 위원회 명칭, 기능, 구성, 운영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통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함.

2) 행정안전부(신중검토)

- 위원회를 신설하기보다는, 현행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의 분과·전문위원회 형태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3) 대한의사협회(반대)

- 보건의료인력의 업무범위 조정에 관한 사항은 종합계획 수립취지(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확보와 근무환경 개선)와 무관함.
- 위원회가 의료법령의 해석을 통해 업무범위를 조정하는 것은 업무범위의 불명확성을 높이는 것이며, 위원회에 비전문가 참여로 전문성 및 중립성 결여가 우려됨.

4) 대한병원협회(신중검토)

- 보건의료인력의 업무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직종별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건의료인력간 업무범위 조정에 관한 사항을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됨.
- 업무조정위원회가 설치되더라도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5) 대한간호협회(신중검토)

- 위원회 판단이 타 법률 규정과 충돌하는 경우 해당 법률에 따른 업무범위가 변경되거나 형해화될 가능성이 있음.
- 개정안에 따르면 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정부도 기속되므로, 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직역 간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음.

6) 대한약사회(조건부 찬성)

-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며 배타적 전문성을 인정받는 보건의료 분야의 특성을 감안하여, 업무조정위원회 및 산하 운영위원회·분과위원회가 보건의료 전문가 중심으로 논의·결정될 필요가 있음.

7) 대한치과의사협회(찬성)

- 업무 전문성과 업무환경을 고려하여 보건의료인력별 업무범위를 정하여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에 동의함.
- 단, 업무조정위원회 부위원장 호선시 각 보건의료 분야 특성에 맞게 호선될 필요가 있으며, 의료소비자 단체 참여범위를 축소할 필요가 있음.

8)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찬성)

□ 전문화·다양화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의 업무범위를 현행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련 법률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우며 직역간
업무범위가 불분명하여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이를 조정·협
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됨.

문 의 처
02)6788-5494